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1.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2. 심사결과	2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
4.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5
[행정안전부 소관]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9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93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93
[인사혁신처 소관]	93
[경찰청 소관]	93
[소방청 소관]	93
5. 대체토론의 요지	113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15
7. 심사결과	116
8. 소수의견의 요지	117
9. 부대의견	117
※ 첨부	120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세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 : 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년 6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6. 3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예산 · 결산기금 소위원회(2025. 7. 1.) 상정 · 심사 · 의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 감 (C=B-A)	% (C/A)
총지출(전체)	72,083,936	73,172,544	84,107,763	10,935,219	14.9
지출(추경대상)	943,387	1,361,065	12,296,284	10,935,219	803.4
일반회계	8,578	8,578	10,307,389	10,298,811	12006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34,809	1,352,487	1,988,895	636,408	47.1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 감 (C=B-A)	
					% (C/A)
합 계	331,129	338,971	345,620	6,649	1.9
일반회계	331,129	338,971	345,620	6,649	1.9

※ 자료: 소방청

4.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행정안전부 소관]

I. 개 관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 배경 및 요건

□ 정부는 최근 경기부진이 심화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① 소비·투자 촉진 및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②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뒷받침하며, ③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회복을 도모하고, ④ 세입경정을 통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¹⁾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나. 편성 규모 및 주요 내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5조원 수준으로,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5.3조원,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2.5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조정하여 3.0조원,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19.8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이를 재원으로 한 일반지출 20.2조원 중 15.2조원은 경기진작, 5.0조원은 민생 안정에 활용하고, 세입경정으로 세입 10.3조원을 축소할 예정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구 분	편성액	주요 내용
1.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2. 민생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3. 세입경정	10.3조원	▶ 세입감액 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여력 확보
합 계	30.5조원	

※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가.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감은 없고,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73조 1,725억 4,400만원 대비 총 10조 9,352억 1,900만원 증액된 84조 1,077억 6,300만원임.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현계획) (A)	2025년 제2회 추경안(변경안)		증감액 (B-A)	증감률
				요구	조정(B)		
총지출(전체)	72,447,356	72,083,936	73,172,544	84,107,763	84,107,763	10,935,219	14.9
지출(추경대상)	1,258,092	943,387	1,361,065	12,296,284	12,296,284	10,935,219	803.4
[일반회계]	16,881	8,578	8,578	10,307,389	10,307,389	10,298,811	120060.7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0-301)	-	-	-	10,296,667	10,296,667	10,296,667	순증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16,787	8,033	8,033	8,633	8,633	600	7.5
10.29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2735-309)	94	545	545	2,089	2,089	1,544	28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41,211	934,809	1,352,487	1,988,895	1,988,895	636,408	47.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300,000	-	400,000	1,000,000	1,000,000	600,000	150.0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300)	869,667	874,154	891,832	944,332	944,332	52,500	5.9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 (2635-301)	71,544	60,655	60,655	44,563	44,563	△16,092	△26.5

※ 자료: 행정안전부

나. 행정안전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민생회복을 도모하고, 재해위험지역정비를 지원하며, 10.29 참사피해자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조 9,35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 사업’에 16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0.3조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 10.29참사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10.29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에 각각 6억원, 15억원을 증액하였음.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 및 할인비용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과거 재해발생지역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에 각각 6,000억원, 525억원을 증액하였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 사업’은 실집행 부진액 161억원을 감액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내역]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현계획) (A)	2025년 제2회 추경안 (변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일반회계]	16,881	8,578	8,578	10,307,389	10,298,811	120060.7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0-301)	-	-	-	10,296,667	10,296,667	순증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16,787	8,033	8,033	8,633	600	7.5
10.29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2735-309)	94	545	545	2,089	1,544	28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41,211	934,809	1,352,487	1,988,895	636,408	47.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300,000	-	400,000	1,000,000	600,000	150.0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2635-300)	869,667	874,154	891,832	944,332	52,500	5.9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보조) (2635-301)	71,544	60,655	60,655	44,563	△16,092	△26.5

※ 자료: 행정안전부

II. 검토의견

1. 민생회복 소비쿠폰(신규)(1350-301)

-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근 경제지표, 기존 정책의 효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국회에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합리적인 선별기준·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사용처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수급대상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매칭구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사업으로 10조 2,96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	10,296,667	10,296,667	순증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	10,241,700	10,241,7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	-	-	-	-	54,967	54,967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단계로 나눠 지급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40만원²⁾의 소비쿠폰을 보편 지급한 뒤, 소득 기준 상위 10%의 국민을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설명³⁾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민생경제 회복 목적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78.2%, 지방비 21.8%)
 - *서울 70%, 그 외 80% 가정
- (증액내역) 10조 2,966억 6,700만원 (국비 10.3조원, 지방비 2.9조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 차등 지급 시 10조 2,417억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 상품권 발행, 시스템 구축 등 549억 6,700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구체적 지급방식

- 1차적으로 전국민 대상 지급 후, 고소득자 제외 차등 지급
 - (1차) 전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25.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5,116.9만명
 - (2차) 상위 10% 선별·제외 후 10만원 지급
 - (인구감소지역) 지급 시기는 미정이나, 84개 시·군** 주민 대상 2만원 추가 지급
 -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등 5개구(58.8만명) 제외

구분(지원인원)	1차지급	2차지급	총 지급액	총 소요(억원)
① 상위 10%(511.7만명)	15만원	-	15만원	7,675
② 상위10%~차상위계층(4,295.9만명)	30만원	10만원	25만원	107,398
③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37.9만명)	40만원	10만원	40만원	1,516
④ 기초생활수급자(271.4만명)	미정	미정	50만원	13,570
⑤ 인구감소지역(411.4만명)			+2만원	823
합계			15~52만원	130,982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2)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3)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해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나, 그 지급시기는 향후 구성될 범정부 TF에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임.

□ 이는 2020년 제2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함) 사업과 유사한 현금성 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 구체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4.3조원이 소요되었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9~10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여 총 11조원이 소요되었음.
- 또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사업은 지급수단으로 기존 소지중인 i)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를 충전받거나 ii) 선불카드 또는 iii)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4개월 미만이었음.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1차·2차 지급시기, 고소득자 선별기준, 지급수단 및 사용기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향후 구성될 범정부 TF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신속하고 차질없는 소비쿠폰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임.

4) 행정안전부는 2025.06.23.(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TF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됨.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사업과의 비교]

구분	긴급재난지원금 (’20년 제2회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년 제2회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
지급대상	전체가구 ※ (당초) 소득하위 70% → (국회심의) 전체가구	소득하위 80% 가구 ※(국회심의) 1인맞벌이가구 기준 완화로 총인구 88% 지급	전 국민 대상
지급단가	가구원 수 비례 차등지급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0만원)	1인당 15~52만원 ※ 소득·지역 기준 차등지급
지급시기	2020년 5월	2021년 9월~10월	(1차) 미정 (2차) 미정
사용기한	2020년 8월말까지 (최대 4개월 미만)	2021년 12월말까지 (최대 4개월 미만)	미정
지급단위	세대주 지급	개인 지급	개인 지급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에서 택1 ※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현금 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에서 택1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비율·방식은 미정)
재정소요	14.3조원	11.0조원	13.1조원
국비	12.2조원 ※ 국고보조율: 서울 70% / 기타 80% 원칙 → 국회 증액과정에서 일부 조정(국회 증액분은 모두 국비 부담)	8.6조원 ※ 국고보조율: 서울 70% / 기타 80% 원칙 → 국회 증액과정에서 일부 조정(국회 증액분은 모두 국비 부담)	10.2조원 ※ 국고보조율: 서울 70% / 기타 80% 원칙
지방비	2.1조원	2.4조원	2.9조원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 2020.12. 및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6.을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10.2조), 발행비용 및 인건비·홍보비 등(446억원)이 보조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며, 기타 범정부 TF 운영비(1억원), 성과분석 연구용역(2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운영(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세목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예산	세부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0,241,70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 상위 10% 511.7만명×15만원×78.18% : 6,001억원 - 일반국민 4,295.9만명×25만원×78.18% : 1조 749억원 - 한부모·차상위 37.9만명×40만원×78.18% : 1,516억원 - 기초수급자 271.4만명×50만원×78.18% : 1조 3,570억원 - 인구감소지역 411.4만명×2만원×78.18% : 658억원
	44,622	○ 발행비용 : 25,699 - 지역사랑상품권 : [{①(511.7만명×15만원)+②(4,295.9만명×25만원)+③(37.9만명×40만원)+④(271.4만명×50만원)×1%×20%×78.18%}]+{⑤(411.4만명×2만원)×1%×20%×80%}5) = 20,498백 - 선불카드 : 5,117만명×10%×1,300원/장×78.18% = 5,201백 ○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 17,256 ○ PC 등 장비 임차료 지원 : 784 ○ 자치단체 홍보비 지원 : 883
일반수용비 (210-01)	100	○ TF팀 운영물품 구입 : 50 - 설명서·홍보물품 등 : 2.5×20회 ○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 50
관리용역비 (210-15)	90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운영 : 900
국내여비 (220-01)	16	○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점검 등 출장비 : 16 - 현장점검 여비 등 : 1.6×10회
사업추진비 (240-01)	60	○ 범정부 TF 관련 협의회 운영 : 30 - TF 관련 협의회 운영 등 : 0.5×60회 ○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점검 간담회 : 30 - TF 관련 협의회 운영 등 : 0.5×60회

5)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쿠폰 총 금액의 20%)의 1%에 해당함.

세목	예산	세부내역
일반연구비 (260-01)	20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과분석 연구용역 : 2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490	○ 새울시스템 AP개발비 : 281 ○ 암호화 및 연계 솔루션 : 483 ○ DB 구축 : 523 ○ 유지관리 : 203
자산취득비 (430-01)	7,579	○ HW 도입 : 4,700 ○ SW 도입 : 2,879

※ 자료 : 행정안전부

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 행정안전부는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⁶⁾인데,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한 경제 지표 및 재정여건, 기존 현금성 지급 사업의 정책적 효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1) 최근 경제 동향 및 재정여건

- 첫째, 동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목적을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총생산(GDP) 및 소비 관련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 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분기에서 2022년 3분기까지 3~7%대로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2022년 4분부터 2024년 4분기까지의 경우 2024년 1분기를 제외하고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0%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GDP 성장률의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코로나19의

6) 특히,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월 매출액·영업이익이 2023년 1,231만원·854만원에서 2025년 854만원·209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98.6만명이 폐업하였으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4년 4분기 11.16%로 2013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임.

7) 이는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검토보고」 pp4-16을 참조

유행과 함께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고 2021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023년 3분기 이후 2024년 4분기까지 1%대 초반 이하로 GDP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개년 GDP 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

연도	분기	GDP 성장률 (A)	민간소비 증가율 (B)	격차 (B-A)
2020	1분기	1.2	△4.4	△5.6
	2분기	△2.6	△3.9	△1.3
	3분기	△0.8	△4.1	△3.3
	4분기	△0.5	△6.1	△5.6
	연간	△0.7	△4.6	△3.9
2021	1분기	2.6	0.6	△2.0
	2분기	7.0	4.3	△2.7
	3분기	4.6	3.7	△0.9
	4분기	4.2	6.4	2.2
	연간	4.6	3.7	△0.9
2022	1분기	3.4	4.3	0.9
	2분기	3.0	4.4	1.4
	3분기	3.4	5.3	1.9
	4분기	1.3	2.9	1.6
	연간	2.7	4.2	1.5
2023	1분기	1.3	5.0	3.7
	2분기	1.2	1.7	0.5
	3분기	1.5	0.7	△0.8
	4분기	2.2	0.8	△1.4
	연간	1.6	2.0	0.4
2024	1분기	3.4	1.1	△2.3
	2분기	2.2	0.7	△1.5
	3분기	1.4	1.3	△0.1
	4분기	1.1	1.1	0
	연간	2.0	1.1	△0.9
2025	1분기	0.0	0.6	0.6

주) 동 지표는 원계열, 실질, 전년 동기비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주요지표(연간·분기 지표)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난 4~5월 2025년 대

한민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1.0%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함⁸⁾.

[주요기관의 2025년 대한민국 GDP 성장률 전망]

기관명		직전 전망	최근 전망
국내기관	한국은행	1.5% (2025.2)	0.8% (2025.5)
	한국개발연구원(KDI)	1.6% (2025.2)	0.8% (2025.5)
국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 (2025.3)	1.0% (2025.5)
	국제통화기금(IMF)	2.0% (2025.1)	1.0% (2025.4)

※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참조

□ 둘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재정정책은 **이자율**,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들의 동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자율**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0.50%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10월부터 다시 인하되어 2025년 5월 기준 2.75%까지 인하되었음.

8)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한국은행은 2025.2월 1.4%로 예측하였던 것을 동년 5월 1.1%로 하향조정하였고, KDI 또한 2025.2월 1.6%로 전망하였던 것을 동년 5월 1.1%로 하향조정하였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25	1.25	0.75	0.7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2021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75	0.75	0.75	1.00	1.00
2022	1.25	1.25	1.25	1.50	1.75	1.75	2.25	2.50	2.50	3.00	3.25	3.25
2023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2024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25	3.00	3.00
2025	3.00	2.75	2.75	2.75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테마별 통계→한국은행 기준금리

□ 다음으로,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물) 금리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 2%를 하회한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대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8월 이후 다시 2%대로 진입하여 기준금리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고채(3년물) 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373	1.253	1.091	1.024	0.878	0.850	0.826	0.829	0.908	0.910	0.965	0.970
2021	0.975	0.995	1.133	1.138	1.134	1.302	1.419	1.411	1.515	1.842	1.953	1.800
2022	2.060	2.285	2.369	2.941	3.019	3.477	3.238	3.247	3.903	4.235	3.895	3.630
2023	3.460	3.470	3.461	3.263	3.330	3.548	3.638	3.727	3.842	4.031	3.771	3.350
2024	3.266	3.351	3.310	3.439	3.432	3.262	3.083	2.924	2.868	2.911	2.858	2.590
2025	2.571	2.611	2.590	2.395	2.331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1.통화/금융 → 1.3.금리 → 1.3.2.시장금리 → 1.3.2.2시장금리(월,분기,년) → 국고채(3년)

□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2021년 10월 3%대로 진입한 이후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5월에는 1.9%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한국은행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로 전망하였음⁹⁾).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20	1.2	0.9	0.8	0.0	-0.2	0.2	0.4	0.8	0.9	0.1	0.6	0.6	0.5
2021	0.9	1.4	1.9	2.5	2.6	2.3	2.6	2.6	2.4	3.2	3.8	3.7	2.5
2022	3.8	3.8	4.2	4.8	5.3	6.0	6.3	5.7	5.5	5.6	5.0	5.0	5.1
2023	5.0	4.7	4.2	3.7	3.4	2.7	2.4	3.4	3.7	3.8	3.3	3.2	3.6
2024	2.8	3.1	3.1	2.9	2.7	2.4	2.6	2.0	1.6	1.3	1.5	1.9	2.3
2025	2.2	2.0	2.1	2.1	1.9	-	-	-	-	-	-	-	1.9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테마별통계지표→소비자물가지수

□ 셋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중 국채 발행(19.8조원) 비중이 약 65%라는 점¹⁰⁾을 고려하면 최근 재정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최근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2019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채무도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9)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5월)」, 2025.5, p26

10) 기획재정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06.19.

주요국 대비 건전하다는 평가와 향후 증가 소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평가 등 상반된 입장이 있음.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19~2022년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총수입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기간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음.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음에도 총수입 증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2016~2025년 재정규모·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 규모	총수입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573.9	612.2	651.6
	전년대비(%)	8.1	7.2	8.1	1.7	1.2	19.2	8.3	△7.1	6.7	6.4
	총지출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56.6	673.3
	전년대비(%)	3.5	5.6	6.8	11.7	13.4	9.3	13.5	△10.5	7.5	2.5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16.9	24.0	31.2	△12.0	△71.2	△30.5	△64.6	△36.8	△44.4	△21.7
	GDP대비(%)	1.0	1.3	1.6	△0.6	△3.7	△1.5	△3.0	△1.6	△1.9	△0.8
	관리재정수지	△22.7	△18.5	△10.6	△54.4	△112.0	△90.6	△117.0	△87.0	△91.6	△73.9
	GDP대비(%)	△1.3	△1.0	△0.6	△2.8	△5.8	△4.4	△5.4	△3.9	△3.9	△2.8

주 1)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2)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4대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수지

3) 2015~2023년은 결산 기준 / 2024년은 예산 기준 / 2025년은 본예산 기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 재정·경제통계, 「2025 대한민국 재정」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 최근 재정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세수입의 결손이 지적되는데, 최근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수납액을 살펴보면 2019년~2020년 각각 0.5%, 2.2%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이후 2021년~2022년에는 각각 21.7%, 15.3%의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으나,¹¹⁾ 2023년 및 2024년 각각 14.1% 및 8.3%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2016~2024년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수납액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액(A)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56.1
수납액(B)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26.2
오차율[(B-A)/A]	8.8	9.5	9.5	△0.5	△2.2	21.7	15.3	△14.1	△8.3

※ 자료: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2025년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로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4년 4월(37.3%)보다 낮은 수치로 2025년에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¹²⁾, 이에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세수결손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임.

11) 참고로, 2021~2022년에는 국세수입 초과수납이 예상되자 이를 활용하여 각각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총지출이 증가되었음.

12) 관련보도 : 머니투데이, “10조 ‘세수결손’ 공식화…5년 만에 세입경정 나선李정부”, 2025.06.1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수입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항-목)	2025년 본예산 (당초)	2025년 제1회 추경 (현계획) (A)	2025년 제2회 추경안(변경안)		증감 (B-A)	%
			요구	조정 (B)		
총수입(전체)	395,125,326	396,377,424	386,044,797	386,044,797	△10,332,627	△2.6
수입(추경대상)	215,312,918	215,315,918	204,983,291	204,983,291	△10,332,627	△4.8
[일반회계]	215,168,129	215,168,129	204,823,502	204,823,502	△10,344,627	△4.8
○ 법인세	88,254,358	88,254,358	83,567,118	83,567,118	△4,687,240	△5.3
○ 상속세	8,463,696	8,463,696	9,401,541	9,401,541	937,845	11.1
○ 부가가치세	87,638,775	87,638,775	83,329,244	83,329,244	△4,309,531	△4.9
○ 개별소비세	9,666,300	9,666,300	8,747,915	8,747,915	△918,385	△9.5
○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00	15,104,800	14,001,191	14,001,191	△1,103,609	△7.3
○ 교육세	6,040,200	6,040,200	5,776,493	5,776,493	△263,707	△4.4
[공공자금관리기금]	144,789	147,789	159,789	159,789	12,000	8.1
○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44,789	147,789	159,789	159,789	12,000	8.1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통상적으로 국가채무의 누적으로 귀결되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중은 2019년까지 30%대에서 유지되었으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 10개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채무	626.9	660.2	680.5	723.2	846.9	970.7	1,067.7	1,134.4	1,195.8	1,273.3
GDP대비 비중	36.0	36.0	35.9	37.6	43.8	46.7	49.4	50.4	47.4	48.1

주) 2016~2023년은 결산 기준 / 2024~2025년은 예산 기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 재정·경제통계, 「2025 대한민국 재정」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종합)」¹³⁾는 한국의 채무 수준이 다음 표와 같이 ①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②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복지 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주요국 대비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전망치]

(단위: %, %p)

국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규모
한국	55.2	56.6	57.3	57.9	58.4	58.9	59.4	0.7
일본	252.4	254.6	252.6	251.3	251.0	251.0	251.7	△0.12
이탈리아	137.3	139.2	140.4	142.6	143.1	144.7	144.9	1.27
미국	122.1	123.3	126.6	128.9	130.7	132.6	133.9	1.97
프랑스	110.6	111.6	112.8	113.4	114.1	114.6	115.2	0.77
캐나다	107.1	104.7	102.1	100.2	98.6	97.1	95.4	△1.95
영국	101.1	104.3	106.4	107.3	108.3	109.2	110.1	1.50
독일	64.3	63.7	62.3	61.0	59.8	58.7	57.7	△1.10
스웨덴	35.9	36.0	35.0	34.0	33.0	32.3	31.4	△0.75

주) 국가채무(D1)는 국내에서만 산출하는 개념이므로 국제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정부부채(D2) 개념을 사용하기에 이전 문단과 채무수준 수치가 일부 상이함. 참고로,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정부·지자체 채무만을 집계하는 반면 일반정부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정부·지자체 외에 일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통상 후자의 규모가 크게 집계되고 있음.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4.4.),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종합)」, 2024.11., p.127. 재인용)

1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종합)」, 2024.11., pp.125-127.

□ 한편, 정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000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 3.3%에서 - 4.2%로,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48.4%에서 49.0%로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정규모·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3	2024	2025			B-A
				본예산	1차추경(A)	2차추경(B)	
재정 규모	총수입	573.9	612.2	651.6	652.8	642.4	△10.4
	전년대비(%)	△7.1	6.7	6.4	6.6	4.9	△1.7
	총지출	610.7	656.6	673.3	687.1	702.0	14.9
	전년대비(%)	△10.5	7.5	2.5	4.6	6.9	2.3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36.8	△44.4	△21.7	△34.3	△59.6	△25.3
	GDP대비(%)	△1.6	△1.9	△0.8	△1.3	△2.2	△1.0
	관리재정수지	△87.0	△91.6	△73.9	△86.4	△110.4	△24.0
	GDP대비(%)	△3.9	△3.9	△2.8	△3.3	△4.2	△0.9
국가 채무	국가채무	1,134.4	1,195.8	1,273.3	1,280.8	1,300.6	19.8
	GDP대비(%)	50.4	47.4	48.1	48.4	49.0	0.6

주) 2023년은 결산 기준 / 2024~2025년은 예산 기준

※ 자료: 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및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

2) 기존 현금성 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한 효과성

□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정책연구용역을 위탁하여 각각의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¹⁴⁾.

□ 이에 따르면,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한 가구의 카드소비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지원금액의 26.2%~36.1%, 2021년에는 19.2%~36.8%의 소비 증가 효과가 도출되었음.

- 구체적으로, 2020년과 2021년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재난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2020년의 경우 지역별로 1.8~2.9%p(약 4.0조원)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필수재 구입처(편의점, 마트, 약국 등)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021년의 경우 약 2.8조원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으며 식생활·쇼핑·유통·의류 등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2020년의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총 2.1조원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¹⁵⁾되었는데, 해당 가구에 대한 별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 증가 효과는 지원금

14)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지원금의 “제도적 사항 정리”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을 분담하여 2020년 12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라는 보고서를 남겼음.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원금의 “제도적 사항 정리”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함께 수행하여 2022년 6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남겼음.

15)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예산 14.3조원 중 2.1조원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12.1조원은 수급 가구에 지급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선불카드는 1.84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은 0.67조원, 신용·체크카드는 9.62조원이 선택되었음.

액의 21.7% 수준으로 분석되며, 식료품 및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기존 현금성 지원금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구분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년)
	신용·체크카드 수령가구	현금 수령가구	신용·체크카드 수령가구
연구기관 /연구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영욱 ※ KDI 연구위원 (좌측 연구 참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I」 ※ 정부 연구용역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소비 효과」 ※ 노동경제논집 제44권제1호 게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정부 연구용역
연구방법	이중차분 회귀분석 ※ 지원금 지급시기 카드 매 출 변화를 분석하되, 확진 자감소·거리두기완화 등 교란요인은 지원금 사용제 한 업종 사례와 대조하여 제거	설문조사	이중차분 회귀분석 ※ 지원금 지급시기 카드 매 출 변화를 분석하되, 교란 요인은 지원금 미수령 가 구 사례와 대조하여 제거
주요결론	지원금의 26.2% ~ 36.1% 가 신용·체크카드소비 증가로 연결	지원금의 21.7% 가 가계소비 증가로 연결	지원금의 19.2% ~ 36.8% 가 신용·체크카드소비 증가로 연결 ※ 1인가구: 36.8% 2인가구: 23.2% 3인가구: 20.3% 4인가구: 19.2%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I」, 2020.12., 이영욱, 「긴급재난
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2021.3.,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6.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

- 동 사업의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 재정여력, 유사 정책의 효과성 등과 보편지원·선별지원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선별지원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적고 저소득층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면 보편지급 방식 대비 높은 목적적합성(소비촉진·생계지원)을 가질 수 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선별기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낮으며, 선별 과정에서 지급시기가 지연되고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¹⁶⁾.
- 반면, 보편지원 방식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나, 수급자들의 수용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6)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71

[소비쿠폰 지급방식별 장·단점]

구분	선별지원	보편지원
장점	적은 재정부담 높은 목적접합성	높은 수용성 신속성
단점	낮은 수용성 선별 과정 시간·행정력 소모	높은 재정부담

□ 동 사업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의 한계를 각각 보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신속히 보편지원을 한 뒤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2차적으로 선별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선별 과정이 지연될 경우 높은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급시기가 지연되고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지급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¹⁷⁾, 행정안전부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을 설계하여야 하며¹⁸⁾, 2단계에 걸쳐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는 경우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선별기준 및 지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17) 관련 보도 : 중앙일보, “‘내가 왜 상위 10%’...코로나 이어 민생지원금도 ‘선별 논란’”, 2025.06.22.

18)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지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소득세로 환수하는 방안,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강제적 환수로 인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공제제도의 목적과의 괴리 등의 한계가 지적됨(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81-82)

다. 사업계획 구체화 및 합리적 선별기준 마련 필요

- 첫째, 동 사업은 지원대상 선별기준, 소비쿠폰 지급 시기, 구체적인 지급수단, 소비쿠폰 사용기간, 사용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준비가 미흡하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약 13조원(국비 10.2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2차에 걸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형태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구성될 범정부 TF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런데, 동 사업 목적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점, 기존 현금 지원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은 지급 직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기에 1차 지급 및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에도 선별기준, 지급시기¹⁹⁾ 등에 관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국회심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국회 심의가 원활히

19)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시기, 인구감소지역 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한 지원 여부 등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범정부 TF에서 향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소득기준으로 선별지급이 이루어졌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9월 6일 지급을 시작하였음.
- 둘째, 소비쿠폰을 선별지급하는 경우 소득 기준(상위 10%)설정에 대한 논란과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별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1차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 대해 2차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나, 그 구체적인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범정부 TF 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임.
- 행정안전부는 소득보전 기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급한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선별방식을 채택할 때에는 보편·타당한 기준²⁰⁾을 찾기 어려우므로 상위 10%라는 기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²¹⁾.

20) 정부는 당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소득 기준을 상위 30%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상위 20%로 설정하였음.

21)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의신청이 39.5만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의신청이 46.1만건 제기되었음.

□ 또한, 소득 기준 상위 10%를 선별함에 있어 어떠한 선별기준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였는데,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²²⁾하여 적은 행정비용으로 신속히 지급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와 기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각 가입자 간 산정방식과 소득시점의 차이가 있어 양측의 소득여건을 동일하게 반영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같은 소득지표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 재산 정도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출됨.

22) 2023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는 약 5,002백만명으로, 그 중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511만명, 지역가입자는 1,490만명임.

[건강보험 가입 방식별 보험료 산출 방식]

구분	산출방식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소득 월액 × 건강보험료율) + { 재산 (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보험료 산정 시점과 관련하여, 만약 정부가 '25년 7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직장가입자는 전월인 2025년 6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5월에 신고한 20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²³⁾되어, 지역가입자는 지난 1년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등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함.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시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5년 6월 보수월액 기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규모(종합소득세 2023년 분) 기준으로 2024.11.~2025.10월까지 보험료 산정

주) 2025년 7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고 가정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갱신하는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는 2024년 5월에 신고한 2023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

- 셋째, 소득 이외의 선별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²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지급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TF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자에 대해 2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면서 부산광역시(동구, 서구, 영도구) 및 대구광역시(남구, 서구) 내 5개의 자치구에 거주하는 약 60만 명의 주민은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제외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노동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지원 여부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²⁵⁾²⁶⁾은 결혼이민자, 영주권

24) 이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하며 외국인은 제외됨.

25)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지급 대상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난민 등에 대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음²⁷⁾²⁸⁾).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²⁹⁾.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2. 지급 제외

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비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6) 이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37),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63)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2024.07.18.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2024.08.01. 제416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2024.08.19.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2024.09.26. 재의결을 거쳐 부결되어 폐기되었음.

2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4,303만명에게 10조 7,565억원 지급완료“, 2021.12.08.)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인 23,680건, 국적취득·해외이주자에 대해 1,593건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28) 참고로, 2024년 영주권자 수는 20만 2,968명, 결혼이민자 수는 118만 1,436명, 장기체류외국인은 204만 2,017명이며,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총 1,544명('24년은 105명)임. (법무부 출입국통계 참조)

29)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

□ 선별기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2020년,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³⁰⁾, 향후 행정안전부는 선별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³¹⁾.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024.03.28. 2020헌마1079).

- 3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69-70 /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72-79 / 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233-23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1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30-31
- 31) 참고로, 2021년 당시 정부는 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에 대해 자산 기준을 적용하거나,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험료를 가산정하는 절차를 거쳤음.

라. 목적적합성에 부합하는 지급수단 및 사용처 설정 필요

- 2020년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모바일) 등이었는데³²⁾,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신용·체크카드 지급이 7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0년·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분포]

구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합계
긴급재난지원금 (2020)	1,464만 가구 (66.1%)	292만 가구 (13.2%)	173만 가구 (7.8%)	287만 가구 (12.9%)	2,132만 가구 (10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3,078.1만명 (72.1%)	445.5만명 (10.4%)	748.2만명 (17.5%)	-	4,271.8만명 (100.0%)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의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지급하되, 지급수단별 구체적인 비중, 지급수단별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TF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동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급수단과 사용처 설정 시 지급수단별 특징,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의 업종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현금지급이 이루어졌음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수급자가 등록한 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하나, 2020년 및 2021년의 사례를 참고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경제·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을 수 있음.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와 사용처가 같아 정책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지급 시 일정한 발행비용이 발생하게 됨³³⁾.

□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신용·체크카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³⁴⁾, 부정유통 단속비용, 기타 운영비용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³⁵⁾이 소요되며 지류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해 소비 증대 효과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³⁶⁾³⁷⁾.

33) 행정안전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선불카드 발행비용으로 5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34) 한편,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개이나, 이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43개의 지자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미발행 시 그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발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미발행하는 경우 그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이 1개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역사랑상품권).

35) 행정안전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으로 20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음.

36)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80%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비율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별 비교]

구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장점	낮은 행정비용	카드 미보유자 이용 가능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
	발급 편리성		
단점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 지원효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 지원효과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비용 발생
	접근성 (카드 미보유자 限)	발행비용 발생	현금화 가능성 존재

□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급수단별 특성, 2020년 및 2021년 재난지원금의 규모별·지역별 매출 증대, 지역상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2020년 및 2021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2020년과 2021년 모두 마트·식료품,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비중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였음.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7)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pp100-103 참조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 현황(신용·체크카드 한정)]

긴급재난지원금 ('20년 5~8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년 9~10월)		
업종	사용액	비중	업종	사용액	비중
마트/식료품	2조 5,143억원	26.3%	마트/식료품	2조 3,897억원	28.6%
대중음식점	2조 3,251억원	24.3%	음식점	1조 8,776억원	22.4%
병원/약국	1조 172억원	10.6%	병원/약국	7,560억원	9.0%
주유	5,788억원	6.1%	편의점	7,198억원	8.6%
의류/잡화	4,518억원	4.7%	주유	4,861억원	5.8%
기타	2조 6,719억원	28.0%	기타	2조 1,364억원	25.5%
합계	9조 5,591억원	100.0%	합계	8조 3,656억원	100.0%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2020년 및 2021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가맹점 규모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사용률은 2020년 63.4%, 2021년 80.5% 임.

[2020·2021년 재난지원금 가맹점 규모별 사용 현황(신용·체크카드 한정)]

가맹점 구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비중)	
	긴급재난지원금 ('20년 5~8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년 9~10월)
계	9조 5,591억원(100.0%)	6조 8,761억원(100.0%)
영세 중소신용카드(연매출 30억 이하)	6조 725억원(63.5%)	5조 5,364억원(80.5%)
영세가맹점(3억 이하)	2조 3,787억원(24.9%)	2조 2,639억원(32.9%)
중소가맹점(3~30억)	3조 6,938억원(38.6%)	3조 2,725억원(47.6%)
대형신용카드가맹점(30억 초과)	3조 4,866억원(36.5%)	1조 3,397억원(19.5%)

※ 자료: 행정안전부

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 및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전체 소요 예산 13.1조원 중 국비 비율이 78.2%(10.3조원)이며 지방비 비율이 21.8%(2.9조원)인데, 이는 국비 지원을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70%의 지원을 적용³⁸⁾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상하지 못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2.9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2.9조원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비부담액 총액 3조 7,146억원의 78.3%이며, 이는 최근 5개년 추가경정예산의 지방비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 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담액과 비교하였을 때 지방비부담액이 가장 과증했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많은 수준이며 직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30% 증가한 수준임.

[최근 5개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고보조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합 계
2021년	1차	1,034,080	275,450	1,309,530
	2차	9,424,275	2,884,829	12,309,104
2022년	1차	334,404	334,404	668,808
	2차	2,547,248	1,415,278	3,962,526
2025년	1차	1,015,238	864,109	1,879,347
	2차	11,024,775	3,714,666	14,739,441

주) 정부 제출안 기준이며, 2023년 및 2023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참조

□ 최근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감소³⁹⁾하고 교부세·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⁴⁰⁾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채무의 증가로 관리채무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¹⁾.

39) 다만, 정부는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교부세 교부 규모를 감액하지는 않을 것이며, 본 예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임.

40) 2023년도 지방세 징수 규모(잠정)는 112조 4,609억원으로 2022년의 118조 5,707억원 대비 6억 1,098억원(5.15%) 감소하였음(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세 개요」, 2024.9., p10).

41) 한편, 2023년도 결산액 기준 지방채무는 38조 5,644억원으로 전년대비 2,898억원(7.6%)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4조 2,719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3,883억원(48.1%) 증가하였고 2023년도 결산액 기준 지방채 잔액은 38조 4,619억원으로 전년대비 2,974억원(0.8%) 증가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4.9., 186-187).

[최근 5개년 지방교부세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	
						B-A	B-A/A
보통교부세	513,318	655,171	666,466	598,439	604,018	5,579	0.9
특별교부세	15,876	20,263	20,612	7,403	6,586	△817	△11.0
부동산교부세	52,153	86,204	57,133	41,098	40,047	△1,022	△2.6
소방안전교부세	10,352	8,648	8,692	9,548	9,856	308	3.2
계	591,699	770,286	752,903	656,488	660,507	5,682	6.1

주) 2021~2023년은 결산 기준 / 2024~2025년은 예산 기준

※ 국회 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⁴²⁾]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표성격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1.90	△2.23	1.94	5.26	△1.27	상향(↑)
	경상수지비율	69.94	75.02	69.95	64.62	73.12	하향(↓)
채무 관리	관리채무비율	6.27	6.28	7.06	6.93	7.08	하향(↓)
	관리채무상환비율	2.38	2.52	2.32	2.14	3.01	하향(↓)
	통합유동부채비율	22.66	26.27	24.05	22.23	22.60	하향(↓)

주 1) 2021~2023년은 결산 기준 / 2024~2025년은 예산 기준

2) 상향지표(↑)는 지표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 값이 낮을수록 양호

※ 행정안전부·지방세연구원,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 2024.12., p28

☐ 둘째, 일률적인 분담비율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

42) 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에 활용됨.

{(세입-세출 및 순융자)/세출 및 순융자}×100으로 산출함.

② **경상수지비율**은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자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구조 판단에 활용됨.

③ **관리채무비율**은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로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 측정에 활용됨.

④ **관리채무상환비율**은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 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채무 상황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 측정에 활용됨.

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충당정도 측정에 활용됨.

(행정안전부·지방세연구원,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 2024.12., p278)

계층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조율의 다층화 등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재정력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202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자립도⁴³⁾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7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종시로 65.0인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4.3로 가장 낮으며 경상북도는 25.8로 두 번째로 낮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⁴⁴⁾⁴⁵⁾.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인구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편차가 존재하고 소득계층 분포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수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차등적 보조비율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해 보임.

43)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 $\{(경상수입+자본수입+융자회수)/통합재정수입\} \times 100$ 임.

44)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4.9., pp283-302

45)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국고보조 80%, 지방비 20%의 매칭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2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담분은 약 107억원인 반면 최하위인 전남의 예상 부담분은 약 797억원으로 나타나 재정력과 지방비 부담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p110-113).

[지역별 재정력 및 소비쿠폰 지급 대상 관련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재정자립도	주민등록인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비율		비율
서울특별시	74.6	9,328	18.2	145	14.5	428	16.8
부산광역시	44.7	3,254	6.4	76	7.6	235	9.2
대구광역시	41.8	2,358	4.6	56	5.6	155	6.1
인천광역시	54.5	3,037	5.9	65	6.5	174	6.8
광주광역시	39.0	1,400	2.7	37	3.7	96	3.8
대전광역시	41.6	1,440	2.8	31	3.1	78	3.1
울산광역시	46.4	1,094	2.1	18.6	1.9	41	1.6
세종특별자치시	65.0	392	0.8	3.7	3.7	8.6	0.3
경기도	49.1	13,706	26.8	194	19.4	474	18.6
강원특별자치도	29.9	1,511	3.0	36.7	3.7	87	3.4
충청북도	29.4	1,591	3.1	32	3.2	82	3.2
충청남도	34.8	2,136	4.2	39	3.9	93	3.6
전북특별자치도	24.3	1,731	3.4	60	6.0	131	5.1
전라남도	27.9	1,784	3.5	54	5.4	107	4.2
경상북도	25.8	2,521	4.9	64	6.4	151	5.9
경상남도	32.5	3,218	6.3	75.5	7.5	176	6.9
제주특별자치도	39.1	667	1.3	15	1.5	35	1.4
계	48.6	51,169		1,002.5		2,516.6	

- 주 1)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이며, 인구수는 2025.5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2)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023년 12월 기준이며, 타 보장제도 중복수급을 포함한 수치임.
 3)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임.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pp283-302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괄적인 매칭 비율을 설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급대상자 수 등을 감안한 차등적인 매칭구조를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상품권 구매유인 및 소비자의 이익 증가 등의 장점과 국비로 지원하는 상품권의 규모 및 수혜자 수 감소 등의 단점이 병존하므로, 적절한 범위의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의 할인율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할인율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할인율이 상향되는 만큼 부정사용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이 밀집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 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에 본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000억원(150.0%)이 증액되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00	300,000	-	400,000 ⁴⁶⁾	1,000,000	1,000,000	600,000	150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음. 2019년도에는 88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그 규모가 1조 2,522억원까지 확대되었음. 그 이후에는 2022년 8,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원으로 다시 그 규모가 확대된 것임.

46) 2025년 6월 20일 기준 예산 4,000억원 중 3,700억 6,500만원(92.5%)이 집행되었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재정 투입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경안)
국비 투입액 (억원)	100	884	6,690	12,522	8,050	3,522	2,998	10,000

※ 자료: 행정안전부

□ 현재 동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지자체가 동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⁴⁷⁾을 발표하고 있음.

2024년 기준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판매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개 중 190개임.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0.5조원, 수도권에는 2.4조원, 비수도권에는 4.0조원, 인구감소지역에는 1.5조원 등 총 8.4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임. 발행규모에 대한 국비보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에는 8%, 인구감소지역에는 10%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47) 2024년에는 지침의 명칭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었으나, 2025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계획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원 계획]

유형	발행규모(조원)	국비보조율	국비지원액(백만원)
불교부단체 ¹⁾	0.5	2%	10,877
수도권	2.4	5%	120,634
비수도권	4.0	8%	315,649
인구감소지역	1.5	10%	152,840
합 계	8.4		600,000

주1) 불교부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임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여부 및 고려 사항

- 「국가재정법」 제89조⁴⁸⁾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요건으로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③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및 증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 주요 경제지표 현황을 보면,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0% 내외를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증감률 역시 0% 내외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최근 1년간 주요 경제지표 현황]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	1.2	△0.2	0.1	0.1	△0.2
민간소비증감률 (전기대비, %)	0.5	0.0	0.4	0.2	△0.1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48)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⁴⁹⁾의 최근 1년간(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체감지수는 51.3~70.0, 전망지수는 56.6~86.9 으로 모두 100 미만⁵⁰⁾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과 전망 모두에서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1년간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 현황]

	2024년								2025년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체감	64.4	57.3	54.5	55.4	65.6	69.1	62.4	53.7	47.6	51.3	66.5	63.6	70.0
전망	73.4	67.4	57.9	56.6	82.8	83.9	79.8	79.3	75.5	69.3	86.6	86.9	79.8

주: 1. 지수가 100이상은 경기호전으로 인식, 100미만은 경기악화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2. 체감지수는 조사시점 당월의 경기동향에 대한 인식, 전망지수는 조사시점의 다음 달의 경기동향에 대한 인식

자료: 「2025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소상공인진흥공단, 2025. 6.

49)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기체감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치화한 지수

「2025년 5월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조사 설계」

구분	소상공인	전통시장
조사 대상 기준	• 소상공인 사업체	• 전통시장 내 점포
모집단	•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중 5인 미만 사업체 (※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	•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표본 크기	• 2,400표본	• 1,300표본
표본 오차	• 95.0% 신뢰수준에서 $\pm 1.85\%p$	• 95.0% 신뢰수준에서 $\pm 2.69\%p$
조사 기간	• 5월 18일(일) ~ 5월 22일(목)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에 기반한 전화 조사	

※ 자료: 「2025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소상공인진흥공단, 2025. 6.

50) 100이상은 경기호전으로 인식, 100미만은 경기악화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또한, 전통시장의 경기동향지수(BSI)의 최근 1년간(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별 추이 역시, 체감지수는 40.3~63.2, 전망지수는 47.6~88.7으로 모두 100미만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상인들도 체감과 전망 모두에서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BSI) 현황]

	2024년								2025년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체감	57.5	46.3	42.4	45.4	76.2	61.1	63.2	49.7	49.3	40.3	55.6	53.1	59.0
전망	66.7	63.0	47.6	45.0	88.7	79.2	82.1	77.5	76.9	60.7	80.6	84.5	75.2

주: 1. 지수가 100이상은 경기호전으로 인식, 100미만은 경기악화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2. 체감지수는 조사시점 당월의 경기동향에 대한 인식, 전망지수는 조사시점의 다음 달의 경기동향에 대한 인식

※ 자료: 「2025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소상공인진흥공단, 2025. 6.

이처럼 다양한 경기동향 지표들이 경기침체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확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일정 정도 충족한다고 보임.

□ 다만,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첫째, 추경안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상품권 구매유인 및 소비자의 이익 증가 등의 장점과 국비로 지원하는 상품권의 규모 및 수혜자 수 감소 등의 단점이 병존하므로, 적절한 범위의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고 있는데, 불교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기존 자율에서 최소 7%로, 일반지자체는 기존 7~10%에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로,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인상하고 있음.

[2025년 제2회 추경안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계획]

구분	유형	기존	제2회 추경안
제2회 추경 지원분	불교부단체	자율	7%
	수도권	7~10%	10%
	비수도권	7~10%	13%
	인구감소지역	10%	15%

※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지역민의 상품권 구매유인이 높아지고, 구매자 1인당 얻게 되는 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상향된 할인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권의 규모는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할인율이 상향될수록 1인당 상품권 구매액 역시 증가하는 연구결과⁵¹⁾ 및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6.23.)을 개정하여 1인당 월별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는 1인당 상품권 구매액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품권 수혜자의 수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음.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동 사업에 3,700억원(예산은 4,000억원)을 집행(2025. 6. 20. 기준)하여 13.7조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였고,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6,000억원으로 8.4조원의 지역사랑 발행을 지원할 예정임. 이처럼 제2회 추경예산에서 할인율은 인상하자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비 증액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의 증액규모보다 더 큼에도 국비를 통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원규모는 축소(13.7→8.4조원)될 것으로 보임.

51) 할인율 수준에 따른 상품권 구매의향

할인율 수준	구매하지 않음 (구매액=0)	현금 구매 (구매액>0)	상품권 평균 구매액
할인율 0%	92.67%	7.23%	0.29 만원
할인율 3%	75.93%	22.97%	1.78 만원
할인율 5%	51.22%	48.68%	6.99 만원
할인율 7%	42.33%	57.58%	10.76 만원
할인율 9%	8.90%	91.01%	25.41 만원

주: 지방행정연구원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여효성·김도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2021

[제1회 추경예산과 제2회 추경안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구분	유 형	발행규모 (조원)	국비보조율	국비지원액 (백만원)	할인율
제1회 추경 지원분 ¹⁾	불교부단체	-	-	미지원	자율
	일반지자체	11.0	2%	224,972	7~10%
	인구감소지역	2.7	5%	145,093	10%
	합 계	13.7		370,065	
제2회 추경 지원분	불교부단체	0.5	2%	10,877	7%
	수도권	2.4	5%	120,634	10%
	비수도권	4.0	8%	315,649	13%
	인구감소지역	1.5	10%	152,840	15%
	합 계	8.4		600,000	

주: 1) 제1회 추경 지원분은 6월 20일 기준 집행된 금액(3,700억원)으로 작성, 예산액은 4,000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경우 높은 할인율로 지역민의 구매유인을 높일지, 낮은 할인율로 상품권 지원규모를 늘려 혜택받는 지역민의 수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의 할인율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할인율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을 7~15%까지 차등화하여 발행지원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국비보조율 역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2~1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비부담율은 아래 표와 같이 지자체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5%로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음.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71억 9,300만원, 수도권 지역은 1,206억 3,500만원, 비수도권 지역은 1,972억 8,00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764억 2,000만원 가량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함.

[제2회 추경안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보조율 및 지방비부담율]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발행규모 (조원)	국비보조율 (국비부담액) (A)	지방비부담율 (지방비부담액) (B)	할인율 (A+B)
제2회 추경 지원분	불교부단체	0.5	2% (10,877)	5% (27,193)	7%
	수도권	2.4	5% (120,635)	5% (120,635)	10%
	비수도권	4.0	8% (315,648)	5% (197,280)	13%
	인구감소지역	1.5	10% (152,840)	5% (76,420)	15%
	합계	8.4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변형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5%가량의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유인을 높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불교부단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간의 재정여력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각각 1,972억 8,000만원, 764억 2,000만원의 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²⁾

특히, 자체재원으로 지방비 5%를 부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할인율이 상향되는 만큼 부정사용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할인율을 인상하고 있는데,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할인율이 인상될수록 부정사용⁵³⁾의 위험이 높아지게 됨.

최근의 연구는 상품권의 발행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정사용 사례도 연계해서 증가될 수 있으며, 할인율이 높아지면 부정사용

52)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의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밀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53)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주고 받는 행위로서, 소위 ‘깡’이라고 불리움.

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증가하므로 부정사용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⁵⁴⁾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6.23.)에서도 원칙적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이상의 할인율은 지양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만 10%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인율 인상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음.⁵⁵⁾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사용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 부정수취·불법환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13건에서 87건 정도의 부정수취·불법환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위험이 있음.

54) 여효성·김도영,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55)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p. 9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율 설정(법 §15-②)
 ○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은 지양**
 ○ 다만,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가능
 * (예시) 명절 및 지역 축제·행사 기간, 국비 교부시 별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현황]

(단위: 건)

단속기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부정수취 불법환전	77	25	45	87	35	13	56
전체 부정 유통 ¹⁾	112	90	80	104	101	93	141

주: 1) 전체 부정유통의 유형에는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에 사용, 결제거부, 현금과의 차별, 기타 등으로 구성됨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특히,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카드형, 모바일형에 비해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약한 고령자 층을 감안하면, 지류형 상품권 비중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실정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합계
2022	25,844	51,677	194,676	272,197
2023	17,521	46,149	145,749	209,149
2024	12,964	42,653	120,153	175,769

※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상품권의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6)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에서는 전체 부정유통 141건 중 지류형이 102건, 카드형이 27건, 모바일형이 12건으로 나타났다.

□ **넷째**,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이 밀집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추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서 가맹점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통기준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예외적으로 ①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②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의 경우, ③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고, 민간 농자재판매소 등 민간사업장과 경합하지 않는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의 경우에만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임.

또한, 2025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⁵⁷⁾을 개정하여 예외 사유로 ④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25년 6월 기준)내

57) 2024년에는 동 지침의 명칭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었으나, 2025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6. 23)으로 변경됨.

농협 하나로마트도 추가하였음.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연매출액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여 왔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지역에는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외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할 마땅한 소매점이 없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동 지침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임.⁵⁸⁾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가맹점의 업종 및 매출규모 제한에 대한 완화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우선, 2025년에 신규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연매출 30억원 제한의 예외를 허용했으나, 그 예외 허용조건이 ‘같은 면지역 내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어야’ 하므로, 대다수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여전히 가맹점에 포함될 수 없어 지역민의 불편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⁵⁹⁾

58)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농·어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의안번호-2204943, 2024. 10.28.)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59) 농협이 충청남도 시·군 내 면(88개)지역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 판매장인 경우는 16개(88개 중 18.2%)인데, 이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지침’의 개정에 의하더라도 80%이상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충청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045, 2024. 8.)

또한, 동 지침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만 연매출액 규모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축협 하나로마트 및 수협 하나로마트 등도 농협 하나로마트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추경안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수도권: 21.9%,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78.1%)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방 중소형마트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영농자재 판매소, 주유소, 지역 농수산물 도소매업자)의 경우까지 가맹점 자격을 허용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지역별 자원배분 취지와 부합할 수 있음.

[제2회 추경안의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배분비율]

유형	발행규모(조원)	국비보조율	국비지원액 (백만원)	국비배분비율
불교부단체 ¹⁾	0.5	2%	10,877	131,512 (21.9%)
수도권	2.4	5%	120,634	
비수도권	4.0	8%	315,649	468,488 (78.1%)
인구감소지역	1.5	10%	152,840	
합 계	8.4		600,000	

주) 불교부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임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침 개정 이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지역 중 소상공인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한도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2434-30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상의 요건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봄.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본예산에는 8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86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다 6억원(7.5%)이 증액되었음.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하는 시민참여 문화행사 개최,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현장탐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중장기 경영전략계획 수립,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16,787	16,787	8,033	8,633	8,633	600	7.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7,685	7,685	8,033	8,633	8,633	600	7.5
기념관 기반 조성	7,445	7,445	-	-	-	-	-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1,657	1,657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의 사업추진과 연내 집행 완수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시·홍보,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⁶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024년

6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의 경우 전년 대비 97억 800만원 삭감된 7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산에도 해당 금액 예산이 회복되지 못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운영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임.

[2023~2025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A)	2024년 (B)	(B-A)	202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24,922	16,787	△8,135	8,0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17,393	7,685	△9,708	8,033
기념관 기반 조성	5,873	7,445	1,572	-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1,656	1,657	1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재가공

□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민주주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으나, 최종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중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시민참여행사 개최,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및 사료수집 등의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시민참여행사 개최 2억원, 민주주의 현장탐방 1억원,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1억원,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1억원, 사료수집 사업 1억원 등임.
-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시민참여행사는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회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가치 아래 통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민주주의 현장탐방은 일반 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연계 탐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축소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존 4,6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은 k-민주주의 확산 등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고 사업회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은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기념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사료 수집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을 통해 다양한 사료 콘텐츠를 발굴·확보하여 기념관의 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2억 3,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세계 민주주의의 날 시민참여행사》	200 (+200)	《세계 민주주의의 날 시민참여행사》 ○ 시민참여행사 운영용역: 190 ○ 시민참여행사 기획 부대경비: 10
46	《민주주의 현장탐방》 ○ 계승사업: 46	146 (+100)	《민주주의 현장탐방》 ○ 현장탐방 행사대행 용역: 90 ○ 현장탐방 발대식 준비 등: 40 ○ 현장탐방 기획 관련 부대경비: 16
-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100 (+100)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컨설팅: 90 ○ 관련 부대경비: 10
-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100 (+100)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용역: 90 ○ 기획 관련 부대경비: 10
230	《사료수집 사업》 ○ 주요 사료 수집: 120 ○ 구술 사료 수집: 110	330 (+100)	《사료수집 사업》 ○ 주요 사료 수집: 220 ○ 구술 사료 수집: 110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회통합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및 민주주의 콘텐츠 경험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도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 편성을 위해서는 목적적합성·예측불

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⁶¹⁾

□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의 연체율·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⁶²⁾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경기침체를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본예산의 실행률이 2025년 5월 말 기준 34.8%에 그치고 있어, 기존 예산의 절약집행 등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중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³⁾

[2025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 집행 현황]

6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2025.4., p 42.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성할 것

6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원 규모 새정부 추경 편성”, 2025.6.19.

63) 다만,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 80억 3,300만원 중 인건비 등이 60억 6,900만원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19억 6,400만원에 불과하여 절약집행 등을 통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2025	8,033	-	-	8,033	6,500	2,794	80.9	34.8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둘째, 해당 사업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① 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⁶⁴⁾
- 그런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시민참여행사 개최 및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등의 추진이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민주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이 직접적인 소비·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경기진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해당 사업 추진 시 이를 통한 소비·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 시민참여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계약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창출하는 등, 정부의 추가경

64) 앞의 보도자료.

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 셋째,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민주주의 현장탐방 사업은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 등을 직접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임.

□ 그런데, 정부가 작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3일 국회로 이송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예산 확정 이후 8월부터 행사 용역 계약과 탐방 접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현장탐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입찰 과정에서 유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어 동 예산의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 심의·의결 상황과 사업 추진 일정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피해지원·추모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연내에 예산 집행과 관련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지연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신규 내역사업인 ‘피해추모·지원사업’에 15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제2회 추경(B)	증감 (B-A)	
	본예산	추경			(B-A)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94	94	545	2,089	1,544	283
지원단 운영	94	94	545	545	(-)	(-)
피해지원·추모사업	(-)	(-)	(-)	1,544	1,544	순증

나. 피해자 지원 절차 소요 기간에 따른 집행 지연 가능성 고려 필요

□ ‘피해지원·추모사업’은 2024년 5월 공포·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①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생활안정금 지원, ②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치유�휴직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③ 정부 주관의 추모행사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금 지원에 8억 8,800만원, 치유�휴직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에 3억 5,600만원, 추모행사 지원에 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

[피해지원·추모사업 세부내용]

구 분	생활지원금 지원		고용유지비용 지원		추모행사 지원	
예산 현황	25년 본예산	25년 제2회 추경	25년 본예산	25년 제2회 추경	25년 본예산	25년 제2회 추경
	(-)	888백만원	(-)	356백만원	(-)	300백만원
근거 ⁶⁵⁾	특별법 제57조		특별법 제61조		특별법 제67조	
주요 내용	·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구당 1회 일시금 지급)		· 기업 등에 치유툽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및 대체인력 고용비용 지원		· 정부 주관 2025년 제3주기 추모행사 추진 비용 지원	
세부 산출 내역	· 희생자(159명) 유가족 가구 x 4,373천원(5인가구 기준) · 피해자(103명) 가구 x 1,873천원(4인가구 기준)		· 치유툽직자(20명) x 1,980천원 x 6개월 · 대체인력(20명) x 990천원 x 6개월		· 전담인력, 무대장치, 운영비 등 300백만원	

6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제61조(근로자의 치유툽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툽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7. (생략)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참사 직후 희생자 유가족 및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구호금, 생계비, 장례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나,

희생자의 유가족을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포괄적 관점의 피해 회복과 장기적인 시계에서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2025년 6월 5일을 기준⁶⁶⁾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⁶⁷⁾(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03명⁶⁸⁾이며, 참사 이후 관련 법령 제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피해자들의 생활보조 및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신속한 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66)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단가 산출 기준일

6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5. (생략)

6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있음.

[2025년 6월 5일 기준 피해자 인정 신청 현황]

구 분	종전 피해자 ⁶⁹⁾ (63명)	신규 피해자 인정 신청자(40명)
대 상	· 참사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복지부)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았던 자	· 종전 피해자 외에 신규로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한 자

※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공포·시행으로 생활지원금, 치유휴직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추모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2025년 1월 동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으로 예산 지원의 세부 절차 및 범위가 구체화되었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피해지원·추모사업’은 이러한 법령의 시행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생활지원금의 실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생활 안정

69) 2025년 6월 기준 종전 피해자의 수는 296명으로 추산되는데, 종전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신청이 필요하나,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피해자 인정 결정(피해자 인정 결정서 송부)하기로 결정(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차 회의 의결, '25. 3.21.)

및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생활지원금 지원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생활지원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로서의 인정 신청 및 결정 단계의 지연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생활지원금 지원 단계별 절차]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 인정 결정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중전 피해자 및 신규 피해자 신청자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 피해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결정된 지원액을 피해자에 지급

- 특히, 2025년 4월 1일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일인 6월 5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103명인데,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피해자 인정 신청자 40명 중 5명에 대해서만 피해자 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생활지원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로서의 인정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연내 지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6월 18일 기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결정 현황]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 인정 결정 (6.18. 기준)		
일자	계	종전피해자	신규 신청자	계	종전피해자	신규 신청자
6. 5.	103	63	40	85	80	5
6.18.	252	80	172			

※ 자료: 행정안전부

- ☐ 따라서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예산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신청자에 대한 피해자 인정 결정을 수행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행정안전부는 신규 피해자 인정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인정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7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피해자 인정 결정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 ☐ 둘째, 생활지원금 지원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생활지원금 지원액 결정을 위한 가구 구성원 수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의 진행 과정에 따라 집행 지연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임.

- 예를 들어, 생활지원금 지원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 시점에 따라 신청 단계에서 지급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신규 피해자 인정 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의 신청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결정된 지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기간⁷⁰⁾ 등을 고려하면, 생활지원금 신청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 절차 단계별로 생활지원금의 연내 지급에 대한 지연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됨.

70) 신청인(피해자)은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통지 받은 생활지원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가능함. 이의신청이 가구원 수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함.

[2025년 생활지원금 지원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생활지원금 신청	○ 신청인(생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피해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25. 6. 9.~ 별도 공지 시까지	6. 9.~
생활지원금 지원액 결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청인의 피해자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이 확인 시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 조사·확인 후 생활지원금 지원액 결정 ○ 참사피해자지원단 - 시·군·구에서 통보한 생활지원금 신청 현황 및 지원액 및 지급 대상자 중복 여부 등 확인	6. 9.~
생활지원금 지원액 통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청인에게 생활지원금 지원액 통지 ○ 신청인 - 지원액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10월~
생활지원금 지급	○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청인 계좌로 생활지원금 지급	11월~

※ 자료: 행정안전부

□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로 피해자 가구원 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어, 가능한 많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는 시·군·구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침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지연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향후 추가 실시 예정⁷¹⁾이고, 각 시·군·구에 배포(‘25. 6. 4.)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근거로 각 지역별로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7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지자체 담당자 회의·교육을 ‘25. 6.20. 기준 3회(‘25. 5.16., 5.30., 6.17.) 실시함.

5.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편성된 사업지구에 대해 각 사업지구의 증액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해서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내 해당 사업지구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계획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업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단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8,74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내역 사업에 176억 7,800만원이 증액된 8,918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역사업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525억원이 증액된 9,44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A)	2025년 제2회 추경(B)	증감 (B-A)	
	본예산	추경				(B-A)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7	869,667	874,154	891,832	944,332	52,500	5.9
재해위험지구정비	484,578	484,578	469,782	469,782	522,282	52,500	11.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51,710	451,710	437,971	437,971	490,471	52,500	12.0

나. 증액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여력을 고려한 보조금 관리·감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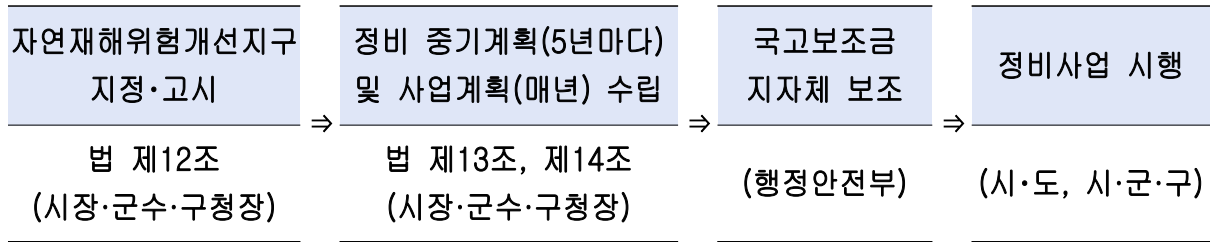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⁷²⁾에 근거하여 7개 유형⁷³⁾의 피해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임.

7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① 침수(시가지, 하천 등), ② 유실(교량, 암거 등), ③ 고립(교통두절 마을 등), ④ 취약방재(제방·배수문·유수지·저류지 등), ⑤ 해일(지진·폭풍해일·너울성 파도 등), ⑥ 붕괴(급경사지·산사태 등), ⑦ 상습가뭄(3년간 제한급수, 논 물마름 반복지역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 절차]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421개소와 재해위험저수지 103개소에 해당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국고보조를 목적으로 4,69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계속 사업 중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연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지구 8개소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지구 25개소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국고보조를 하기 위해 525억이 증액된 5,222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예산 증액 규모]

구 분	연내 준공 가능 8개소	사업기간 단축 가능 25개소	총 계
증액 규모	144억 1,600만원	380억 8,400만원	525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경 편성 대상 사업지구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번	지 역	사 업 지 구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2024년까지		2025년		증감 (B-A)	
			추경 전	추경 후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B)		%
1	대전 서구	정림	2021.1 ~2027.6	2021.1 ~2026.12	21,000	8,935	7,915	3,105	4,105	1,000	32
2	대전 유성	구암2	2024.1 ~2026.6	2024.1 ~2025.12	3,420	300	222	171	3,120	2,949	1,725
3	경기 연천	동막	2021.1 ~2026.6	2021.1 ~2025.12	15,267	10,819	10,784	3,594	4,448	854	24
4	경기 포천	포천	2022.1 ~2028.12	2022.1 ~2028.6	24,500	2,515	2,515	2,818	3,818	1,000	35
5	강원 원주	문막교	2022.1 ~2028.12	2022.1 ~2028.6	16,594	4,916	4,551	250	2,250	2,000	800
6	강원 강릉	우암	2022.1 ~2028.6	2022.1 ~2027.6	10,823	5,660	5,660	1,377	2,877	1,500	109
7	충북 충주	용원	2021.1 ~2026.12	2022.1 ~2026.6	3,994	1,142	415	449	1,449	1,000	223
8	충북 진천	용몽	2021.1 ~2027.6	2021.1 ~2026.12	15,750	6,835	6,833	1,783	4,783	3,000	168
9	충북 진천	돌팍이	2022.1 ~2027.6	2022.1 ~2026.12	3,931	400	400	393	893	500	127
10	충북 충주	상대촌	2021.1 ~2028.6	2021.1 ~2027.12	4,950	1,245	1,050	250	750	500	200
11	충북 옥천	적하	2023.1 ~2028.6	2021.1 ~2027.12	8,150	660	619	1,289	1,789	500	39
12	전남 목포	임성	2021.1 ~2028.6	2021.1 ~2027.12	19,280	8,103	8,031	600	2,600	2,000	333
13	전남 장흥	고읍	2023.1 ~2028.12	2023.1 ~2028.6	13,160	869	869	-	300	300	순증
14	전남 무안	청수1	2025.1 ~2026.6	2025.1 ~2025.12	1,500	-	-	15	1,500	1,485	9,900
15	전남 무안	현경	2022.1 ~2026.6	2022.1 ~2025.12	6,000	4,599	4,599	373	1,401	1,028	276
16	전남 구례	선월	2021.1 ~2028.12	2021.1 ~2028.6	15,650	3,885	1,699	250	3,250	3,000	1,200
17	경북 포항	자호	2021.1 ~2028.12	2021.1 ~2028.6	22,450	2,500	2,392	1,596	2,046	450	28
18	경북 포항	가사	2022.1 ~2028.6	2022.1 ~2027.12	15,250	2,600	2,550	1,525	1,975	450	30
19	경북 포항	골안	2022.1 ~2026.12	2022.1 ~2026.6	3,235	950	619	250	750	500	200
20	경북 포항	자명	2022.1 ~2026.12	2022.1 ~2026.6	4,950	1,605	675	250	1,000	750	300

연 번	지 역	사 업 지 구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2024년까지		2025년		증감 (B-A)	%
			추경 전	추경 후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B)		
21	경북 안동	오대1	2021.1 ~2027.6	2021.1 ~2026.12	7,154	2,800	2,782	429	2,429	2,000	466
22	경북 상주	강창교	2022.1 ~2028.6	2022.1 ~2027.12	26,831	2,980	2,844	2,414	5,414	3,000	124
23	경북 상주	함창(구)항	2021.1 ~2027.12	2021.1 ~2027.6	16,498	3,445	3,445	990	3,490	2,500	253
24	경북 영덕	강구교	2018.1 ~2026.6	2018.1 ~2025.12	20,677	15,981	8,129	-	4,696	4,696	순증
25	경북 고령	고방	2021.1 ~2027.6	2021.1 ~2026.12	11,250	5,390	5,372	1,675	2,675	1,000	60
26	경북 고령	치산	2022.1 ~2028.6	2022.1 ~2027.12	20,685	1,800	1,750	1,511	2,511	1,000	66
27	경북 예천	오류	2021.1 ~2028.6	2021.1 ~2027.12	22,590	7,130	2,480	1,829	4,829	3,000	164
28	경북 예천	노배우	2023.1 ~2027.6	2023.1 ~2026.12	4,041	1130	280	200	1,200	1,000	500
29	경북 울진	읍남4-3	2022.1 ~2027.6	2022.1 ~2026.12	12,377	1,845	1845	1,238	3,872	2,634	213
30	경북 봉화	운곡천	2024.1 ~2026.6	2024.1 ~2025.12	2,498	1,000	635	631	1,498	867	137
31	경남 창녕	용석2	2020.1 ~2026.6	2020.1 ~2025.10	11,661	8,840	7,926	1,166	2,821	1,655	142
32	경남 창녕	운봉	2021.1 ~2026.6	2021.1 ~2025.10	10,134	8,252	7,153	1,000	1,882	882	88
33	경남 양산	북부	2021.1 ~2027.12	2021.1 ~2027.6	20,643	7,772	7,772	2,380	5,880	3,500	147
합 계					416,893	136,903	114,811	35,801	88,301	52,500	147

※ : 연내 조기에 준공가능한 사업지구(8개소)

※ 총 사업비는 각 사업지구별로 추경안 편성 전후 변동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침수, 유실, 붕괴 등은 이전의 재해 사례를 참조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재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과거 태풍·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등 조기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지구의 사업 추진 현황에 비추어 증액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첫째,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의 증액은 본예산 확정 후 당해연도에 편성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았거나, 본예산 대비 증액의 정도가 과도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당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본예산 대비 증액 정도가 과다한 주요 사업지구]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까지		2025년		증감(B-A)	
		추경 전	추경 후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B)	(B-A)	%
대전 유성	구암2	2024.1~2026.6	2024.1~2025.12	3,420	300	222	171	3,120	2,949	1,725
강원 원주	문막교	2022.1~2028.12	2022.1~2028.6	16,594	4,916	4,551	250	2,250	2,000	800
전남 장흥	고읍	2023.1~2028.12	2023.1~2028.6	13,160	869	869	-	300	300	순증
전남 무안	청수1	2025.1~2026.6	2025.1~2025.12	1,500	-	-	15	1,500	1,485	9,900
전남 구례	선월	2021.1~2028.12	2021.1~2028.6	15,650	3,885	1,699	250	3,250	3,000	1,200
경북 영덕	강구(구)교	2018.1~2026.6	2018.1~2025.12	20,677	15,981	8,129	-	4,696	4,696	순증
경북 예천	느티바우	2023.1~2027.6	2023.1~2026.12	4,041	1130	280	200	1,200	1,000	500

※ : 연내 조기에 준공가능한 사업지구

※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지구(2개소) 및 본예산 대비 증액률이 500% 이상인 대상

□ 최초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적게 배정되었던 사업지구에 대해 투입된 추가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연내 조기 준공 또는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지구 중 2024년까지의 결산 현황에 따르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집행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사업 시작부터 2024년까지 실집행 부진 주요 사업지구]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까지			2025년		증감(B-A)	
		추경 전	추경 후		예산	결산	실집행률	본예산(A)	추경(B)	(B-A)	%
충북 충주	용원	2021.1~2026.12	2022.1~2026.6	3,994	1,142	415	36.3	449	1,449	1,000	223
전남 구례	선월	2021.1~2028.12	2021.1~2028.6	15,650	3,885	1,699	43.7	250	3,250	3,000	1,200
경북 포항	골안	2022.1~2026.12	2022.1~2026.6	3,235	950	619	65.1	250	750	500	200
경북 포항	자명	2022.1~2026.12	2022.1~2026.6	4,950	1,605	675	42.1	250	1,000	750	300
경북 영덕	강구(구교)	2018.1~2026.6	2018.1~2025.12	20,677	15,981	8,129	50.9	-	4,696	4,696	순증
경북 예천	오류	2021.1~2028.6	2021.1~2027.12	22,590	7,130	2,480	34.8	1,829	4,829	3,000	164
경북 예천	노티바우	2023.1~2027.6	2023.1~2026.12	4,041	1,130	280	24.8	200	1,200	1,000	500
경북 봉화	운곡천	2024.1~2026.6	2024.1~2025.12	2,498	1,000	635	63.5	631	1,498	867	137

※ : 연내 조기에 준공가능한 사업지구

※ 2024년까지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지구 대상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구들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 등 지연 소요가 있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사업 지연 요소들이 해소되어 국고보조를 통한 예산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특히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지구의 경우 사업 재개에 따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사업기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준공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고보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내 준공가능지구 8개소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사업지구가 6개소이며,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한 사업지구로 전남 무안에 소재한 2개소가 있으나, 해당 사업지구의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국고보조예산에 50%:50% 비율로 대응하지 못하는 규모임.

[연내 준공가능 사업지구(8개소) 제2회 추경 증액 대비 지방비 사전 확보 현황]

(단위: 백만원, %)

지 역	사업지구	2025년 본예산		2025년 2회 추경		
		국비	지방비	본예산 대비 국비 증액	지방비 사전확보액	국비 : 지방비 비율
대전 유성	구암2	171	171	2,949	(-)	(-)
경기 연천	동막	3,594	3,594	854	(-)	(-)
전남 무안	청수1	15	15	1,485	87	94.5 : 5.5
전남 무안	현경	373	373	1,028	388	72.6 : 27.4
경북 영덕	강구(구)교	(-)	(-)	4,696	(-)	(-)
경북 봉화	운곡천	631	631	867	(-)	(-)
경남 창녕	용석2	1,166	1,166	1,655	(-)	(-)
경남 창녕	운봉	1,000	1,000	882	(-)	(-)

※ 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상 8~9월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예산편성 지연 여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점과 관계 없이 사업 예산 집행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며, 6개월 정도 남은 잔여 회계연도 및 동계(12월) 공사 시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하는 등 집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내 준공 내지 사업기간 단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 및 이월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고, 해당 조기추진단을 2025년 9월부터는 지구별 추진 상황 점검 등 집행 부진 최소화를 위해 이월방지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소방청 소관〕

I.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389억 7,100만원 대비 66억 4,900만원(1.9%)을 증액한 3,456억 2,000만원임.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1회추경 (A)	2025년 2회추경안 (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40,389	340,389	331,129	338,971	345,620	6,649	1.9
합 계	340,389	340,389	331,129	338,971	345,620	6,649	1.9

※ 자료: 소방청, 총지출 기준

-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의 안전시설 보강 등 총사업비 증액(1,335억원→1,401억원)에 따라, '25년 마무리 공사비 66억 4,900만원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증 감 (B-A)	%	편성내역
	본예산	1회추경 (A)	2회추경안 (B)			
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비)	62,418 (40,685)	62,418 (40,685)	69,067 (47,334)	6,649	10.7	· 총사업비 증액 (1,335억원 → 1,401억원) - 마무리 공사비 66억원 증액
합계	331,129	338,971	345,620	6,649	2.0	

※ 자료: 소방청

II. 검토의견

1.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 - 305)

- 현재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는 10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소방병원 개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 예산 증가분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지체된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소방청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립소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개원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연구 수행 전담 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병원 건립’ 사업비 66억 4,900만원을 반영하여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본예산 624억 1,800만원 대비 10.7%를 증액한 69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국립소방병원 건립 2025년 제2회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감 (B -A)	
	본예산	예산 현액			요구	조정(B)		
국립 소방병원 건립	71,298	84,422	62,418	62,418	69,067	69,067	6,649	10.7
-소방병원 건립	52,130	65,254	40,685	40,685	47,334	47,334	6,649	16.3
-개원준비단 운영	19,168	19,168	21,733	21,733	21,733	21,733	-	-

<국립소방병원 건립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25년 5월 말 기준)						'25년 제2회 추경안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액	제1회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1,298	84,422	71,753	62,418	62,418	12,668	-	75,086	43,154	69,067 (+6,649)
· 민간이전(320)	19,168	19,168	19,168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9,168	19,168	19,168	-	-	-	-	-	-	-
· 일반출연금(350)	-	-	-	21,733	21,733	-	-	21,733	13,210	21,733
-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	-	-	21,733	21,733	-	-	21,733	13,210	21,733
· 건설비(420)	52,130	65,254	52,585	40,685	40,685	12,668	-	53,353	29,944	47,334 (+6,649)
- 공사비 (420-03)	49,662	62,583	50,565	39,116	39,116	12,018	-	51,134	29,030	45,759 (+6,643)
- 감리비 (420-04)	2,412	2,561	1,965	1,521	1,521	596	-	2,117	855	1,521
- 시설부대비 (420-05)	56	110	55	48	48	54	-	102	59	54 (+6)

※ 자료: 소방청

나. 국립소방병원 개원 일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소방공무원의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및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임⁷⁴⁾.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개요>

□ 건립개요

- (규 모)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종합병원
- 연면적 (당초) 32,814㎡ → (최종) 39,433㎡
- (사업기간)
(당초) ‘20 ~ ‘24년 (기본·실시설계 ‘20 ~ ‘21년 / 공사기간 ‘22 ~ ‘23년)
(최종) ‘20 ~ ‘25년 (기본·실시설계 ‘20 ~ ‘22년 / 공사기간 ‘22 ~ ‘25년)
-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 (충북혁신도시 내)
- (총사업예산) (당초) 907억원 → (‘25.5월 말 기준) 1,401억원

□ 주요기능

- 소방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 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 등 4센터·1 연구소 중심으로 특화된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 자료 : 소방청

7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 10. (생 략)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방병원 건립’ 건설비 66억 4,900만원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총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⁷⁵⁾, 2025년도 건설비 본예산 406억 8,500만원 대비 66억 4,900만원이 증액된 47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75) 소방청에 따르면 제11차 총사업비 조정(2025. 4.) 이후 1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이 더 있었음.
- 제12차 총사업비 조정(2025. 6. 10): 1,244백만원 증액 (2025. 6월 현재 국립소방병원 총사업 예산 1,413억원)
- 상세내역 : 교통시설물 추가공사(1,008), 공공지장물이설(153), 물가변동 등(83)
* 소방청은 제12차 총사업비 조정분(1,244백만원)은 2025년도 소방병원 공사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함.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 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비 지원:

(‘25) 40,685백만원 → (‘25 2회 추경) 47,334백만원(+6,649백만원)

- (요구)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25년 마무리 공사비 지원

- (산출)

(단위: 백만원)

연번	항 목	총사업비	증 액	합 계	변경일
1	8차 조정 (자율조정 4차)	133,477	1,004	134,481	’24. 08.
2	9차 조정 (자율조정 5차)	134,481	1,397	135,878	’24. 12.
3	10차 조정 (자율조정 6차)	135,878	893	136,771	’25. 03.
4	11차 조정 (협의조정 2차)	136,771	3,355	140,126	’25. 04.
합 계			6,649		

- (산출세부내역)

1. 자율조정(4차) : 1,004백만원(비탈면보강)

2. 자율조정(5차) : 1,397백만원(물가변동 등)

3. 자율조정(6차) : 893백만원(관급자재비변경, 안전시설보강)

4. 협의조정(2차) : 3,349백만원(설계변경 등), 시설부대비 6백만원

※ 자료 : 소방청

□ 그 동안 소방병원건립 관련 총 사업비는 2020년 사업 시작 당시 907억원에서 11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025년 5월 말 기준 1,401억 2,600만원으로 54.5%가 증가한 49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소방청은 그동안의 총사업비 증액 사유로 공사 중 물가변동분 반영⁷⁶⁾,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 안전점검 등 법정경비 반영 등을 들고 있는데, 특히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제8차~제11차 총사업비 조정 내역은 비탈면과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관급자재비나 물가의 변동 분을 반영하는 등 공사 환경 변화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었다고 설명함.

<소방병원 건립 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변경					
	조정	조정금액			조정사유	주요내용
		현행	순증	조정후		
2020 9.21	1차 (협의)	90,687	6,897	97,584	물가변동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에타 기준 공사 산정 시점 ‘17기준)에 따른 공사 물가변동을 반영 ⇒ 공사비 6,897 증

76) 주요공사 물가변동 내역

공 종	조정횟수	기준일	물가변동조정률(평균)	총 변 동 액
건설사업관리	2회	'22.11.	3.6%	282백만원
건축공사	2회	'22.11.	3.2%	2,150백만원
전기공사	1회	'22.11.	4.8%	439백만원
통신공사	2회	'22.11.	4.4%	213백만원
소방공사	2회	'22.11.	3.6%	304백만원

※ 자료: 소방청

구 분	총사업비 변경					
	조정	조정금액			조정사유	주요내용
		현행	순증	조정후		
2021 12.28	2차 (협의)	97,584	16,820	114,404	설계반영	· 연면적 조정(32,814㎡→39,224㎡)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주차대수 217대→357대) 반영을 위한 지하층 추가(지하1→지하2) **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 공사비 16,414 감리비 373, 부대비 33 증
					기간연장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공사 기간 1년 추가 * KDI 예타 : 설계 2020년, 공사 2021~2023년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 설계 2020~2021년, 공사 2022~2024년
2022 6.28	3차 (협의)	114,404	15,665	130,069	물가변동 설계반영	· 물가변동(최초공사 산정시점 '20.9월) 으로 인한 공사 물가변동을 반영 · 연면적 조정(39,224㎡→39,433㎡) * 주차장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통로면적, 진료공간 사용성을 고려한 소요면적 일부 조정 ⇒ 공사비 13,534 감리비 2,101 부대비 30 증
					기간연장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관련 설계기간 연장(8.5개월 순연) 및 공사 기간 검토 결과(조달청: 30.9개월)의 사유로 인한 공사 착공('22.12) · 준공('25.6) 일정 조정으로 사업기간 1년 추가
2023 2.20	4차 (자율)	130,069	△13,416	116,653	낙찰차액	· 공사&감리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13,416백만원 감액
2024 3.19	5차 (자율)	116,653	1,288	117,941	설계변경	· 안전시설 보강: 시스템비계 500백만원 ·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등 3건 774백만원 · 법정경비 반영: 안전점검 14백만원
2024 5.30	6차 (자율)	117,941	4,281	122,222	폐기물 처리 공공 지장물 이설	· 물가변동: 2,388백만원 · 관급자재비 변경: 563백만원 · 폐기물 처리: 788백만원 · 공공지장물 이설 ⁷⁷⁾ : 160백만원 ·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208백만원 · 감리비: 174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변경					
	조정	조정금액			조정 사유	주요내용
		현행	순증	조정후		
2024 7.24	7차 (협의)	122,222	11,255	133,477	설계변경	· 설계기준 강화 ⁷⁸⁾ : 44백만원 · 단순 설계변경: 의료가스 장비·배관공사, 헬리패드 등 10,699백만원 · 감리비: 488백만원 · 시설부대비: 24백만원
2024 8.8	8차 (자율)	133,477	1,004	134,481	비탈면 보강	· 비탈면 보강: 1,004백만원
2024 12.30	9차 (자율)	134,481	1,397	135,878	안전시설 보강	· 안전시설보강(시스템비계) ⁷⁹⁾ : 611백만원 · 물가변동: 762백만원 · 관급자재비 변경: 24백만원
2025 3.19	10차 (자율)	135,878	893	136,771	관급 자재비 물가변동 안전시설 보강	· 관급자재비 변경: 84백만원 · 물가변동: 33백만원 · 안전시설보강(시스템비계) ⁸⁰⁾ : 776백만원
2025 4.14	11차 (협의)	136,771	3,355	140,126	민원반영 설계변경	· 민원반영 ⁸¹⁾ : 106백만원 · 환경개선 ⁸²⁾ : 50백만원 · 안전시설 보강(책서포트) ⁸³⁾ : 25백만원 · 단순 설계변경: 가설계단 ⁸⁴⁾ , 소방공사 ⁸⁵⁾ 등 3,168백만원 · 시설부대비: 6백만원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분)

※ 자료 : 소방청

77) 차도 확장 및 우·오수관 연결로의 광케이블 이설

78) 법령 개정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반영

79) 시스템비계(공사시 발판 역할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건물 외부 변경분 반영

80) 시스템비계 건물 내부 변경분 반영

81) 개원준비단 요청사항으로 「의료법」 관련 규정 적용(중환자실 규정면적 적용 등 9건 42백만원), 편의사항(수술실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등 11건 64백만원)

82) 공사 진출입 차량 바퀴의 흙을 세척하기 위해 진출입로에 자동세륜기 한 대 추가 설치

83) 주차장 상부 작업차량 등의 하중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 확보위해 필요

84)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에 따라 건물외주 50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설치

85) 소방시설 설치 장소에 각종 배관이나 구조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여 위치 이동에 따른 물량 변경

□ 소방청은 2025년 6월 20일 현재 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의 공정률은 100.0%라고 밝히고 있음.

소방청은 2025년 7월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2025년 12월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동안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금액을 확정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적기⁸⁶⁾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등 소방병원 개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병원 건립 공사비 예산 증가분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함.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공사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준공검사(7월) → 공사비 정산 및 변경계약 → 준공금 청구 → 준공금 지급*(청구일로부터 5일 내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6. 29., 2020. 5. 1.>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9. 6. 2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 다만, 동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의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은 동 사업을 시작한 2020년도에는 2.2%였으나, 2021년에는 47.4%, 2022년에는 41.4%, 2023년에는 36.8%, 2024년에는 19.5%로 동 사업을 시작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현액의 19.5% ~ 47.4%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평균 이월액: 61억 7,240만원, 평균 이월률: 29.5%).

< 소방병원 건립 내역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5월 말 기준)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B)	불용액	비고 (B/A)
2020	2,255	-	-	2,255	2,206	49	-	2.2
2021	2,757	49	-	2,806	1,238	1,329	239	47.4
2022	11,490	1,329	845	12,819	5,988	5,310	1,521	41.4
2023	25,919	5,310	-	31,229	19,589	11,506	134	36.8
2024	52,130	11,506	1,618	65,254	52,585	12,668	-	19.5
2025	40,685	12,668		53,353	43,154			

※ 자료 : 소방청

□ 이러한 대규모 이월의 주요 사유는 사업의 진행이 계획에 비해 지연되었기 때문임.

- 사업 지연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소방병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소방청은 2021년도까지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공사 및 장비·전산 시스템 확충을 완료하여 2023년 12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 기간 연장⁸⁷⁾, 공사 입찰 및 계약 소요 기간 연장,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협의 기간 소요⁸⁸⁾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고, 소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기 역시 2023년 12월에서 2025년으로 변경되었음.

87) 설계용역기간 연장 사유는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에 따라 주차대수를 161.5% 증가 반영(지상4층, 지하1층 → 지상4층, 지하 2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함.

88) 소방청은 2020년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총 11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하였는데, 이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이 4차례 있었음.
소방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 규모 및 주요 조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2차 총사업비 조정('21. 12., 168억 2,000만원)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
- 3차 총사업비 조정('22. 06., 156억 6,500만원) : 물가변동분 반영
- 7차 총사업비 조정('24. 07., 112억 5,500만원) : 설계 변경분 반영
- 11차 총사업비 조정('25. 04, 33억 5,500만원) : 설계 변경분 및 민원 반영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당초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변동 사유 등)
예비타당성조사	'18. 7. ~ '19. 11.	'18. 7. ~ '19. 11.	
타당성조사	'20. 4. ~ '20. 5.	'20. 4. ~ '20. 5.	
기본계획	'20. 4. ~ '20. 9.	-	추진계획 변경 (턴키입찰 →설계공모)
기본설계	'20. 11. ~	'20. 11. ~	
실시설계	~ '21. 12.	~ '22. 7.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에 따른 설계 용역 기간 연장
공사입찰 및 계약	~ '21. 12.	'22. 7. ~ '22. 12.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순 연
용지보상	-	-	
착공	'22. 1. ~	'22. 12. ~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순 연
준공	~ '23. 12.	~ '25. 6.	
※ 향후 국립소방병원 개원 관련 추진 일정			
- 2025. 9. 의료 인력배치(1단계)			
- 2025.12. 의료기관개설 허가취득			
- 2026. 1. ~ 6. 시범진료			
- 2026. 6. 정식개원			

※ 자료 :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연도별 이월·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월			불 용		
	예산 과목	금액	사 유	예산 과목	금액	사 유
2020	기본조사 설계비	49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계약 지체 (‘20. 11. ~ ‘21. 6.)		-	
2021	실시설계비	1,329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계약기간 연장 (‘20. 11. ~ ‘21. 10. →22. 4.)	실시설계비	239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실 시설계비 집행 잔액
				연구용역비	80	·의료·운영 연구 용역비 낙찰 차액
2022	공사비	5,075	·공사(건축/전기/통신/ 소방) 장기계속계약 (‘22. 12. ~ ‘25. 6.)	실시설계비	1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
	감리비	196	·건설사업관리 용역 장기계속계약 (‘22. 12. ~ ‘25. 7.)	공사비	1,520	·공사 계약관련 낙찰차액
	시설부대비	39	·공사 관련 계약수수료		-	
2023	공사비	11,303	12월 2차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공사비	122	·지 열 시 스 템 정산잔액
	감리비	149	12월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공사비	12	·정산잔액
	시설부대비	54	부대경비 공사기간에 따라 이월			
2024	공사비	12,018	관급자재비 등 기성금 미지급분 이월		-	
	감리비	596	감리비 기성금 미지급분 이월			
	시설부대비	54	부대경비 공사기간에 따라 이월			

※ 자료 :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계획89) 및 변경 공사일정>

89) 2022년 제3차 총사업비 변경 이후 변경된 일정을 기준으로 함.

구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토공사(차수/터파기)			지열공사(관급)			지하골조공사					
변경	공사준비		토공사(차수/터파기)			지하골조공사						
			지열공사								되메우기	
구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지상골조공사					외장마감공사					
변경	지상골조공사						실내마감공사					
		지열공사		-		외장마감공사						
구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실내마감공사				준공 준비						
변경	실내마감공사				준공 준비							
	부대토목/조경공사											

※ 자료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방관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소방청은 이미 1년 6개월 이상 지체된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립소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개원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립소방병원 연도별 투자계획(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추경	계
합 계		2,255	2,918	10,570	27,593	71,298	62,418	6,649	183,701
총사업비 관리대상		2,255	2,518	9,970	25,919	52,130	40,685	6,649	140,126
공사비				9,419	24,575	49,662	39,116	6,643	129,415
부 대 비 용	기본조사 설계비	2,255							2,255
	실시설계비		2,518						2,518
	감리비			489	1,262	2,412	1,521		5,684
	시설부대비			62	82	56	48	6	254
총사업비 관리대상 외		0	400	600	1,674	19,168	21,733	0	43,575
기 타	의료장비 및 비품*					2,007	4,062		6,069
	의료용 물품, 소모품						1,238		1,238
	비품 및 물품						5,014		5,014
	정보화 ISP				208				208
	전산시스템					15,035	7,468		22,503
연구용역비			400						400
개원준비단 운영				600	1,466	2,126	2,841		7,033
소방병원 운영							957		957
정주여건 확보**							153		153

* 의료장비 및 비품 : 지자체 200억원 재정 지원 예정('24년 100억원 + '25년 100억원)

** 정주여건 확보 : 의료진 숙소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자료: 소방청

참고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 상병에 대한 치료에서 재활·심신안정 및 연구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악화되는 건강지표 획기적 개선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 ~ '25.(기본·실시설계 '20.~ '22. / 공사 '22.12. ~ '25.6.)
-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부지면적 27,563.2㎡)
- (규모)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지상 4 / 지하 2(연면적 39,433㎡), 종합병원
* 4 특성화 센터 / 1 연구소 : 화상·근골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센터 / 소방
건강연구소
- (사업예산) 2,037억원 (국비 1,837 / 지방비 200) ※ 총사업비관리대상 : 1,401억

2025년					2026년					
6월	7월	8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공사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	제규정 시행	인력배치 (1단계)	의료기관 개설	일부 진료		인력배치 (2단계)	외래진료		정식개원
			모의진료	허가취득						외래진료(시범진료)

< 조감도 >



< 공사장 전경 >



□ 향후 공사일정

- 건축물 준공계 접수 '25. 6.
- 건축물 준공검사 '25. 7.
-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25. 7.

※ 자료: 소방청

5. 대체토론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SOC사업 등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소비쿠폰 사업의 신속한 집행 필요
- 지자체와의 매칭 구조에 따른 지자체의 자체 부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사랑상품권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 소비쿠폰 지급 시 동일액을 보편 지급하고 해당 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하여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지자체 현금성 복지지출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과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소비쿠폰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향후의 소비 진작 방안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시 조립식 주택 지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산사태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비쿠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비 매칭을 강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

-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소비쿠폰 지급 시 현금지급 여부, 유효기간 및 사용 가맹점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
-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
-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비 부담을 차등할 필요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성곤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2조 9,143억 55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2조 9,143억 55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2조 9,000억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에 56억 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 31억 1,550만원

을 각각 증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서 총 2조 9,143억 550만 원을 증액·신설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의 부담도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심사 결과

가.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수정의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정의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 : 원안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의 부담도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채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사용처를 설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를 감안하여 카드사 우대 수수료 적용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SOC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재정 집행률을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한도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계하고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제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금번 추경 증액예산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행사, 현장탐방, 중장기 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 사료 수집 등 핵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회통합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콘텐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예산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심의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 관련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관련, 이전의 재해 사례를 참조하여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재심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주민 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준공 내지 사업기간 단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 지방비 확보 문제를 점검하여,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집행관리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행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 첨부 :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 7.

I.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2,908,770.5	-	2,908,77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535	-	5,535
	합 계		2,914,305.5		2,914,305.5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II.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가. 행정안전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 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신설)	-	-	-	5,655	5,655	○ 대형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 등 산불피해 지역주민에게 공공형 긴급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6억 5,500만원 신규 반영 ※ 사업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 870명* *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770명 (경남) 하동, 산청 및 (울산) 울주 3개 군 100명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규) (1350-301)	-	10,296,667	10,296,667	13,196,667	2,900,000	○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 2조 9,000억원 증액	
3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2436-300)	1,954	-	1,954	5,069.5	3,115.5	○ 국립시설인 광주제주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경비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한 19억 5,400만원 및 제주센터 인력 7명 증원을 위한 11억 6,150만원 등 총 31억 1,550만원 증액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단위: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 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지역발전 활성화 (1231-303)	5,328	-	5,328	7,528	2,200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중 국비 22억원 신규 반영	
2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38-301)	8,915	-	8,915	9,175	260	○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 난복구 활동에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2억 6,000만원 신규 반영	
3	마을기업 육성 (3131-301)	1,675	-	1,675	4,750	3,075	○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성과 기업성 제고를 위한 기획전, 품 평회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 증액 ○ 신규 마을기업(57개소), 마을기업 재지정(72개소), 연합 마을기업(3개 연합)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29억 5,500 만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III.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의 부담도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사용처를 설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를 감안하여 카드사 우대 수수료 적용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SOC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재정 집행률을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한도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계하고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제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금번 추경 증액예산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행사, 현장탐방, 중장기 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 사료 수집 등 핵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회통합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콘텐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예산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 관련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관련, 이전의 재해 사례를 참조하여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재심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주민 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준공 내지 사업기간 단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 지방비 확보 문제를 점검하여,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집행관리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